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

제정 : 2011. 5.

개정 : 2015. 11.

제 1 조 (명칭)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 운영안”이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지원 대상 학회) 지원대상학회의 선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 (지원자의 자격) 타 기관 (학회 주최 측 포함)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단, 타 기관 (학회 주최 측 포함)으로부터 체제비 또는 항공료 등 학회참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만 지원받는 경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1)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정회원 혹은 평생회원 (경비지원자 선정일 기준)

2)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 각1인 (포스터 및 e-포스터, e-비디오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i) 초록 채택 메일 또는 초청장에 역할이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 주저자 미참가시 공동저자 1인 지원 가능하다. 또한, e-포스터, e-비디오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 학회 주관단체 회원 (해당 개최 연도)

제 5조 (지원 신청)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지원신청서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3) 이력서

4) 초록

5) 초록 채택 확인서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 (좌장의 경우 초청장 등)

제 6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해외학술대회 참여지원 대상자 선정)

제 1항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차기 이사장, 총무이사 및 그 외 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제 2항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의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여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신청자의 연령, 이전 지원 여부, 최근 3년 간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및 타 학회지에 제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발표 여부 등을 고려한다.)

제 3항 (지원 범위) 학회참가자 본인의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 학회등록비(각 해당대회 회원 사전등록비 기준), 숙박비(개회 1일전부터 폐회 1일후까지만 인정), 체제비등을 지원 범위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수혜자 의무) 본 규정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연구자는 학술대회참석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장보고서

2) 상세지출내역서

3) 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영수증, 보딩패스, 숙박 Invoice 등 (원본 제출)

4) 정산을 위해 서류 및 증빙자료는 해외학술대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내 미 제출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5) 지원자별 정산액 중 3%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을 따른다.
2. 이 규정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